6. 철물 도장공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외

성별 여성 나이 만 65세 직종 철물 도장	공 직업관련성 높음
--	---------------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약 19년간 △사업장의 사내하청 업체인 □사업장에서 일용직 페인트 도장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0월경 평소와 달리 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. 같은 달 30일 동네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결과 혈색소가 8.6g/dL로 빈혈소견을 보여,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검사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. 근로자는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여 2020년 1월 20일골수생검 시행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업무 중 페인트와 신너의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14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□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색업무에 종사하였다. 근로자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주 6일 출근하였다. 하루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였다. 동료 근로자들이 주로 철물을 용접하여 방호울, 계단, 핸드레일 등 △사업장에 설치될 각종 구조물을 제작한 후, 근로자는 사업장 내 또는 외부(옥외)에서 제작된 구조물에 페인트를 도색하거나 △사업장의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구조물을 설치한 후 도색하였다. 근무 중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고, 작업물량이 많아서 근로자는 보통 거의 휴식없이 하루 종일 도색작업을 하였다. 근로자는 주로 롤러로 구조물을 도장한 후 붓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. 근로자는 옥내나 옥내 밀폐된 공간 또는 외부에서 작업하였는데, 작업 10회 중 8회 정도는 △사업장의 공장 옥내에서 작업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2019년 10월경 평소와는 달리 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. 같 은 달 30일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결과 혈색소가 8.6g/dL로 빈혈 소견 을 보여, 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검사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. 전원된 대 학병원에서 골수생검을 시행 후, 골수이형성증후군(MDS-U, normal karyotype)으로 진단되 었고, 약물치료 및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. 항암치료를 4회 시행한 후 같은 해 10월 7일 아들 을 공여자(donor)로 하여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(haplo-HSCT)을 시행 받았다. 10월 20일 조 혈모세포이식 이후 이식편대숙주질환(GVHD)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저항성 이식편대숙주질환 (Steroid-refractory GVHD) Grade II로 진단되었다. 2020년 11월 경 근로자는 양측 다리 위약감, 시력 저하 및 의식 저하를 호소하여 같은 병원 신경과에 협진 의뢰되었고, 시행한 첫 MRI상에서는 환자 증상을 설명 할 수 있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. 12월 10일 재촬영한 Brain MRI FLAIR 이미지 상에서 두정-후두 백질(parieto-occipital white matter)상 에서 새로 발생한 양측 대칭성 Signal change가 발견되어,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발생한 백질뇌병 증(Leukoencephalopathy)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. 그러던 중 12월 28일 Hemolysis 소견 을 보여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의증 하에 혈장교환술을 시행 받아 호전되었다. 근로자는 2007 년 자궁경부암(cervical ca.) Grade Ib1으로 진단되어 자궁적출술(hysterectomy)을 받았으 며, 2009년 4월에는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. 근로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을 진단받아 치료받기 전까지는 혈압 및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, 의무기록과 환자 진술에서 모두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, 흡연력 및 음주력은 없었다.

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여, 1955년생)은 만 65세가 되던 2020년 1월에 골수형성이 상증후군을 진단 받았다. 근로자는 만 47세가 되던 2002년 11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월까지 15년 7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철물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, 전리방사선, 포름알데히드, 1,3-부타디엔 등을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, 석유 정제산업, 스티렌 등을 제한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.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조사 시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벤젠 함유율을 분석 한 결과, 상도 페인트와 신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, 벤젠노출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과거 노출을 추정 시 근로자의 벤젠 노출량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. 끝.